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2009. 9. 22. 제정

2017. 3. 1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주관부서) ① 자체평가 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처 평가팀으로 한다. (개정 2017. 3.16.)

② 기획처 평가팀은 자체평가 실시 계획 수립부터 자체평가 전반을 총괄한다. (개정 2017.3.16.)

제3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①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6.)

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해당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연구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7.3.1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16.)

1.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영역 및 지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16.)

[제목개정 2017.3.16.]

제4조(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실무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16.)

② 자체평가연구·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 기획처부처장(기획), 기획처부처장(평가) 및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7.3.16.)

[제목개정 2017.3.16.]

제5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매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절차) 자체평가는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공시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계획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17.3.16.)

제8조(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자체평가영역과 자체평가지표는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실시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제9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자체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발전계획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기타 자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9. 9. 22.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